증권선물위원회

의결 제2025-71호

1. 조치대상자의 인적사항

제재대상	내용(회사명, 성명 등)
임직원	甲

2. 조치내용

○ 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(이하 '자본시장법')」 제63조에 따른 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제한 위반에 대하여 甲에 과태료 0.3백만원 부과

3. 조치이유

가. 지적사항

□ 금융투자업자의 임직원은 자기의 계산으로 금융투자상품을 매매하는 경우, 소속 회사에 계좌 개설 사실을 신고한 자기명의의 1개 계좌를 이용하여야 함에도

○ 甲은 소속 회사에 주계좌로 신고한 계좌가 아닌 다른 계좌(본인명의, O개)로 공모주 청약에 참가한 후, 20xx.xx.xx. ~ 20xx.xx.xx. 기간 중 입고된 공모주를 20xx.xx.xx.~20xx.xx.xx. 기간 중 매도함으로써 신고한 주계좌가 아닌 다른 계좌(본인명의, O개)를 이용하여 상장주식을 매매한 사실이 있음

나. 근거법규

□ 「자본시장법」 제63조 제1항
□ 「자본시장법 시행령」 제64조 제2항 및 제4항